

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1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3월16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녹지공원과장 이재봉)

□ 제안이유

-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신·구도심간의 공원녹지 확충 등에
사용 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신·구도심간의 녹지조성과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
고, 재원충당은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함.

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조성된 특별회계의 재원은 공원조성관련 토지매입비, 공원 조
성 시설비등에 사용하도록 함.(안 제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공원조성 특별회계 사업비 33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지?</p> <p>○ 중동 상업용지 매각 수입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 계획인지?</p> <p>○ 330억원 외 별도로 세입원은 없는지?</p>	<p>○ 기금으로 조성하지 않고 투자계획에 의거 총 3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</p> <p>○ 주로 7호선 지하철 및 문화예술, 녹지공원사업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, 특별회계를 통해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.</p> <p>○ 이외 별도의 세입원은 없습니다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제231호
의결 년월일	2004.3.19 (제111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3. 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신·구도심간의 공원녹지 확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신·구도심간의 녹지조성과 도시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재원충당은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- 나. 조성된 특별회계의 재원은 공원조성관련 토지매입비, 공원 조성 시설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.(안 제5조)

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동상업용지 매각수입을 활용하여 부천시의 신·구도심간의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공원”이라 함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과 녹지공원 확충을 위한 쌈지공원(소공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
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신·구도심간의 공원녹지 확충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천시공원조성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 전입금
2. 본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
3. 기타 수입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.

1. 공원조성관련 토지매입비, 공원조성 시설비
2. 기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

제6조(준용)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